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- 라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마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19/6/26 개정·2019/7/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
  - 업종별 맞춤형 상장·관리체계 도입 및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
-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를 마련

#### 2) 주요 내용

-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(제8조 제5항)
  - 혁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, 질적 심사시 우선 적용
    - 질적심사 항목 중 기업의 계속성 심사 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심사기준 적용
-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(기술성장기업에 한함)(제28조 제1항 제2호)
  -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·바이오기업은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
    -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, 2년 연속 시 상장폐지
    -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
  -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·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매출액 요건 면제
    - (연구개발 우수기업)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
    - (시장평가 우수기업)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(제2조 제31항, 제26조 제6항)
  -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기존 ‘중소기업’에서 ‘혁신 중견기업 등’으로 확대
    - 스케일업 단계(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 증가율 20% 이상)에 있는 기업
  - 외국기업의 기술특례상장도 허용하되, 대상요건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를 강화
    - (대상국가 제한)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국가(미국, 프랑스, 호주, 일본, 영국, 독일, 캐나다, 홍콩, 싱가포르 등) 설립기업
    - (상장주선인 자격) 최근 3년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 있고, 부실기업(상장 후 2년 이내 투자주의 환기종목·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) 주선실적이 없을 것
    - (의무인수 확대)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한도 상향(25억원 → 50억원)
    - (기술평가등급)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 이상일 것
  
-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(제3조의2, 제4조의2 제2항, 제28조의2 제1항, 제41조)
  - 감사인 선임·해임과 관련한 외감법 규제 준용 등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
    - 3사업연도 계속 감사인 선임 의무화,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
  - 해당 규정 위반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지정,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
  
- 적격시장 외 소재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(제3조의2, 제4조의2 제7항)
  - (역외지주상장) 국내소재 외국지주회사의 형태만을 허용
  - (역외지주상장 외) 감사인은 국내·외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
    - ‘역외지주상장’이란, 외국지주회사와 외국자회사의 설립지가 다른 경우 외국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나 국내 소재 외국지주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말함
  
- 규정개정에 따른 정의조항 신설, 인용조문 및 자구정비(제2조, 제3조의2, 제6조, 제7조의2, 제19조의4, 제26조, 제27조, 제38조, 제41조, 제48조)
  -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 포함(부칙 제4조)
    - 감사인을 선임,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를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사항으로 신설

##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19/6/27 개정·2019/7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혁신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 개정에 따라 업종별 맞춤형 상장·관리체계 도입, 기술특례 상장 대상 확대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4차 산업혁명·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질적심사기준 적용(제8조 제5항, 별표 8)
  - 혁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심사기준 마련
    - 기업의 계속성 심사 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질적 심사기준 적용
  
- 제약·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 규정(제26조 제1항)
  - 제약·바이오기업에 대한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적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 규정
  
- 외국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평가등급 및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규정(제2조 제6항, 제2조 제8항)
  -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자격요건을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을 받도록 강화
  - 상장주선인 자격을 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있고, 상장 후 2년 이내 부실기업 주선질적이 없을 것으로 제한
  
-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 면제(별표 7)
  -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(AA 이상) 계속성 심사 시 기술성 심사항목 미적용
  
-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방안 마련(제2조의3 제2항, 제26조 제1항, 제28조 제3항, 상장서식 8-2)
  - 적격시장외 소재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제한
  - 감사인 선임·변경 등 규정위반 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·해제 시기 규정
    - 3사업연도 계속 감사인 선임 의무화, 감사인 선임시기 등의 규정 위반 시
  - 상장계약서에 국내사무소 설치 및 한국에 주소·거소를 두는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 개정
  
-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·해제 요건(제28조 제3항)
  -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감사의견 변경 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환기종목 지정을 해제하고, 비적정 기업의 재무변수 부실위험 선정기준 근거 마련
  
-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외국기업 제외(별표 4)

##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19/6/26 개정·2019/7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진입요건 중 수익성 기준에 대한 국제정합성 제고 및 주식분산요건 개선으로 기업의 상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  - 외국 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국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를 보호

### 2) 주요 내용

- 진입요건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기준을 ‘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’으로 일원화(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(2),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)
  - ‘영업이익’, ‘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’ 및 ‘당기순이익’ 중 적은 금액에서 ‘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’으로 개선
    - 단, 당기순이익 적용이 필요한 자기자본이익률(ROE) 기준은 현행 유지
- 주식분산과 관련한 진입 및 퇴출요건 완화(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, 제42조 제1항 제2호 나목,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·제5호 나목 및 제48조 제1항 제4호 나목)
  - 증시침체기에는 청약미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입 시 주식분산 요건은 일반주주 수 7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완화
    - NYSE·NASDAQ(400인), HKEX(300인), SGX(500인)에 비해 과도한 수준
  - 퇴출시 주식분산요건 중 일반주주 수 요건은 500인에서 300인으로, 일반주주 유동주식 소유지분은 10% 미만에서 5% 미만으로 완화
-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제한하는 종류주식 의무공모를 폐지(제61조 제1항 제5호·제6호)
  - 종류주식의 주식분산요건(25%)을 충족하는 법인에 불필요한 공모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
-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(제15조 제2항)
  - 적격소재지가 아닌 외국지주회사(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)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
    -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
    - 감사품질관리계약(파트너십 관계)을 맺은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자격을 허용
- 외국법인의 회계규제 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(제15조제3항부터 제6항, 제57조 제2항 제2호,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제79조 제6항)

- 외국법인에게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규제 적용을 위해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, 감사인 선임·변경 시 신고의무 부과 및 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를 마련
-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요건을 준용하여 투자자와 정보소통 및 기업의 책임 강화(제53조 제3항)
  - 국내 설립, 국내 영업소 설치 및 공시업무 책임자의 국내 거소 등을 의무화
- 외국법인에 대해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(제77조 제2항 단서 개정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)
  - 사외이사 자격 및 구성 등은 본국법령 또는 상장된 적격 증권시장에 기준을 준수하되,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임명
- 외국지주회사에 소재지 변경 신고의무 부과하여 소재지를 적격 또는 적격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사인을 변경(제79조 제7항)
  -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및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가 각각 설립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

## 라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19/6/28 개정 · 2019/7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 개정(2019.6.26)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외국기업 외부감사인 선임, 변경 및 해임 제한 관련 관리종목 지정 내용 반영(별표 7)
  - 상장규정에서 외부감사인 선임·변경·해임을 제한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칙에서 지정사유 및 지정시기 반영
- 수익성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의 일원화 반영 등(제26조의2, 제50조, 제53조 등)
  - 상장규정에서 수익성기준을 ‘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’으로 일원화하고,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 ‘주주’ 요건을 ‘일반주주로 개정함에 따라 세칙에도 이를 반영

- 적격 해외증권시장 확대(제10조)
  - 규정에서 열거된 10개 해외 증권시장은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서 지나치게 협소하여 여타 선진 해외증권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확대
    - 마드리드거래소, 스위스거래소, 이탈리아거래소
  
- 시장의 안정성·유동성·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 해외증권시장을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허용
  - 예를 들어, MSCI(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)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증권시장
  
-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신청서류를 추가(별표 3)
  
- 분할재상장시 제출 서류 정비(별표 4)

## 마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2019/6/28 개정·2019/7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 산정방식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범위가 확대(소기업 → 모든 기업)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평가등급 산정방식을 국내기업과 구분(제8조 제2항, 별표 2)
  - 단,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
  - 외국기업은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특례상장 예비심사청구 가능
    -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제2조 제6항 제2호
  - 국내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다른 경우 높은 평가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하되, 1개 평가기관이라도 종합평가등급이 BB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평가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